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24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 : 양부남 • 권향엽 • 김한규

김현정 • 이광희 • 이해식

민형배 • 박균택 • 안도걸

전진숙 · 정진욱 · 채현일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·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·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 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(안 제8조의10 신 설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8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8조의10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 교육 제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의10(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교육) ①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여론조사 분야 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 문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의 요건·위탁 절차, 교육과정, 이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.
- 제26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분석전문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8조의8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제8조의8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) ① ~ ⑥ (생 략) 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8조의10에 따른 선거여론 <신 설> 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 교 육 ⑧ ~ ⑭ (생 략) ⑧ ~ ⑭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8조의10(선거여론조사기관 분 석전문인력 교육) 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 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 력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의 객관성 ·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여론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・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제1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 ① ~ ④ (생 략)

⑤ 삭 제

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<신 설>

1. · 2. (생략)

4. (생략)

⑦ ~ ⑫ (생 략)

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의 요건 · 위탁 절차, 교육과정, 이 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정한다.

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6	

- 1. 제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분석전문인력에게 교육을 받 게 하지 아니한 자
- 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4. (현행과 같음)
- ⑦ ~ ⑫ (현행과 같음)